

|   |                |                                 |
|---|----------------|---------------------------------|
| <br><b>영 광 군</b> | <h1>옥당골소식</h1> | <p>제541호<br/>2020.12.24.(목)</p> |
|---|----------------|---------------------------------|

♡군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지♡

**목 차**

**I. 군정 소식**

- 1. 전입장려금 지원 .....3
- 2.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4
-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접수 .....6
- 4.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8
- 5.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 접수 .....9
- 6. 친환경농자재 지역제품 구매촉진 운동 .....11
- 7. 터미널 주차타워 및 (구)우시장 주차광장 유료화 시행 .....12
- 8. 치매 무료 기억력 검사 .....13
- 9.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지원 사업 .....14
- 10.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 사업 안내 .....15

**목 차**

**II. 기타 소식**

- 11. 2020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실시 .....16
- 12. 매주 수요일은 「실내 소독의 날」 .....19
- 13. 전국 지하수 미등속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20
- 14. 202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22
- 15. 희망 2021 나눔캠페인 .....23

- 1. 도로명주소 바르게 알고 활용하세요! .....25
- 2.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6
- 3. 식사문화개선 캠페인 ..... 27
- 4.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28

## 전입장려금 지원

다양한 전입장려 지원으로 관내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증가 도모

### □ 지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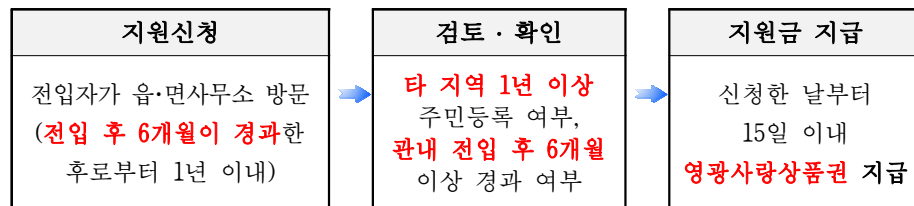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 지원내용

※ 2019. 6. 28일 조례 개정에 따라 2019. 6. 28일 이후 전입자 해당

| 지원대상    | 시책명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비고 |
|---------|-------------|---|----|
| 전입자     | 일 반 전 입 금   | ○세대당 10만원 상당 영광사랑상품권 -세대 구성시  | 1회 |
|         | 기업체 임직원     | ○1인당 15만원 상당 영광사랑상품권<br>(관내 등록된 기업체 임직원으로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사람) |    |
|         | 학 생 학 지 원 금 | ○1인당 20만원 상당 영광사랑상품권<br>(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대학생)                              |    |
|         | 군장병 전 장 려 금 | ○1인당 20만원 상당 영광사랑상품권  |    |
| 국 적 취득자 | 정 착 지 원 금   | ○1인당 50만원 상당 영광사랑상품권<br>(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신규로 주민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
| 공 통     | 쓰 레 기 투     | ○1인당 20배(20리터) - 전입신고 시 지급<br>(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사람)    |    |

### □ 지원절차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12월
- 사업량 : 30가구 ※ 접수 현황('20. 10월말) : 21가구
- 신청자격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거주조건 :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전세주택(관내)에 주소를 둔 경우
  -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 원, 3년간)

###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연 2회(6월, 12월)
- 지급액 : 이자납입 실적분(기준 월정액×납입 월 수)

| 대출잔액(최초 신청 시) 기준    | 월정액(연 최대 지원액) |
|---------------------|---------------|
| 1억 원 이상             | 15만 원(18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10만 원(120만 원) |
|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5만 원( 60만 원)  |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 신청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인구일자리정책실

## 제출서류

- 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⑤ 재산세(전국)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⑥ 전세(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1부.
- ⑦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1부.
- ⑧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1부.
- ⑨ 부부 소득 확인서류 각 1부.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⑩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문의처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061-350-5256)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접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자립 도모

- 신청기간: 2020. 12월부터~
-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지원내용

(단위 : 원/월)

| 구분    | 1급지<br>(서울) | 2급지<br>(경기, 인천) | 3급지<br>(광역시) | 4급지<br>(그 외 지역, 영광군) |
|-------|-------------|-----------------|--------------|----------------------|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 6인~7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 추가요건
  - ①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②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인정
    - ※ 부모가구가 사용대차인 경우 분리지급 불인정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문의사항: 영광군청 사회복지과(☎350-5325) 및 각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

- 신청기간: 2020. 12. 7. ~ 2021. 2. 5.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 융자자격: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중이며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법인)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 '20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종전에 시설자금을 융자하여 '20년 상환한 금액에 대해 '21년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상환기간 1년)
- 융자한도: (농·어업인)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 2억원 이내
- 대출이율: 연 1%, 연체이율 10%
-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에너지 농장 사업, 축사 신·개축,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 운영자금: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 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

※ 문의: 영광군청 농정과 ☎ 350-5374 및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③ 임차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명 서류
-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명 서류
-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면고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 가구수 | 지원상한액(임/월) |             |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식   |
|-----|------------|-------------|--------------|-----------|---|
|     | 1급지 (사포)   | 2급지 (영기/안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기 외) |   |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 부모가구 급여액<br>=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세가구 소득인정액 - 전세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br><br>• 청년가구 급여액<br>=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세가구 소득인정액 - 전세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 접수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과거사 문제를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함.

## □ 개 요

-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2년간)
- 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접수대상 :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및 권위주의 통치까지의 항일운동, 의문사, 인권침해 등 진실규명이 필요한 과거사
- 신청대상 : 희생자 또는 유족 등 친족관계, 목격자 등
- 근거법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20.12.10.시행)  
☞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자 보상 규정 없음(국회 논의 중)  
※ 진실화해위원회(1기) 활동 : 2006년 ~ 2010년 \*공식출범(2005. 12. 1)

## □ 세부사항

### ① 진실규명 신청

#### 가. 신청대상자

-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함
-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하였거나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를 말함  
※ 전해들은 자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나. 신청방법

- 원칙적으로 문서로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신청 가능
- 진실규명신청서(규칙 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함

## ② 진실규명의 범위

- 가.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나.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법률 제7542호)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다.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 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 마.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 접수(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 3393-9700 \*2020.12. 10. 개통예정
- 영광군청 총무과  
- 주소 : (57036)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총무과), 과거사업무담당자  
- 전화 : (061) 350-5722

## 친환경농자재 지역제품 구매촉진 운동

친환경농자재 지역제품 구매활성화를 통해 자금의 타지역 유출차단,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왜! 지역제품을 구매해야 하는가?

- 지역자본의 타지역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 일자리 창출로 인구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농촌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 퇴비를 사용하면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소와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 지역업체 제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농정과 친환경농업팀(350-5383) 또는 읍·면사무소, 읍면농협에 문의
- “친환경농업관” (www.greenjn.com) 확인 가능

###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축분퇴비를 지역업체에서 구매한 농업인은 **2021년부터 농정분야 자체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문의사항: 영광군청 농정과(☎350-5383)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터미널 주차타워 및 (구)우시장 주차광장 유료화 시행

터미널 주차타워 및 (구)우시장 주차광장의 유료화에 따라 장기 주차를 방지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방문객과 군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함

### □ 시설위치 : 터미널 주차타워(영광읍 단주리 579-4)

(구)우시장 주차광장(영광읍 남천리 326외 5필지)

### □ 시행일시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 □ 운영시간 : 08시~20시 유료(그외시간 무료개방)

### □ 주차요금 : 120분(2시간)까지 무료이용, 2시간 초과시 30분당 500원

### □ 결제방법 : 신용·체크·영광사랑카드 및 현금 결제 가능

### □ 관련문의 :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350-5362)

### <위 지도>



터미널 주차타워



(구)우시장 주차광장

##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 『치매 무료 기억력 검사』

고령화시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10%가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만60세 이상 어르신은 1년에 1회 기억력 무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사업명 : 치매 무료 기억력 검사
- ♣ 기간 : 연 중
- ♣ 장소 : 치매안심센터 상담실(2층)
- ♣ 대상 : 치매 기억력 검사를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 ♣ 준비물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서비스 제공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 무료 실시  
치매 선별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진단·감별 검사비 지원
- ♣ 검진절차 및 소요시간  
선별검사(15분) → 진단검사 1단계(1시간) → 진단검사 2단계(30분)  
→ 감별검사(혈액검사 및 뇌 영상촬영(CT 두부)일부지원 등
- ♣ 기타 : 선별검사자 치매사업 홍보물 제공(파스, 마스크 등)
- ♣ 문의 :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4817)

##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지원 사업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와 실종 어르신에게 실종예방 인식표를 보급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

- ♣ 기 간 : 연 중
- ♣ 대 상 : 만 60세 이상 배회 성향이 있는 치매 환자
- ♣ 지원내용
  - 배회감지기 대여 및 가입비 등 사용료 전액 지원
  - 경찰서 시스템과 연계한 치매환자 지문, 사진 등록
  - 배회가능 치매환자 인식표 제작 지원 등
-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에 구비서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서식1,2,3)
  - ② 대상자 및 가족 신분증
  - ③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④ 질병 코드가 표기 된 처방전
- ♣ 치매어르신이 실종되었을 경우 즉시 경찰청 ☎112 실종신고
-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 사업 안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노인에게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성 보장

- ♣ 기간 : 연중
- ♣ 후견대상자 선정기준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 신청 : 읍면 사무소,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 신청
- ♣ 공공 후견인 역할
  - 통장 등 재산관리
  - 관공서 등 서류발급
  -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 ♣ 치매 공공후견사업 업무 추진절차



# 2020 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 실시

- 의료기관
  - 일정: 2020. 9. 8. ~2021. 4. 30. 까지 (약품 소진 시까지)
  - 대상: ①(어르신)만 70세 이상(1950년생 ~
    - 접종기간 : 2020. 10. 19.(월) ~ 2020. 12. 31.(금)까지
    - 만 62세 이상(1958년생 ~
      - 접종기간 : 2020. 10. 26.(월)~ 2020. 12. 31.(금)까지
  - ②(어린이)생후 6개월 ~ 만18세(2002년생 ~2020. 8. 31.)까지
    - ※ 생애 처음 접종 대상자 또는 접종 횟수가 1회인 9세 미만 어린이 2회 접종 실시
    - 2회 접종대상 : 20. 9. 8.(화) ~ 21. 4. 30.(금)
    - 1회 접종대상 : 20. 9. 25.(금) ~ 20. 12. 31.(목)
    - (21. 2월까지 생후 6개월 신규 도래자(20. 7. 1. ~ 8. 31. 출생아) 포함)
  - ③(임신부)주수 상관없이 관내 모든 임신부
    - 접종기간 : 2020. 9. 25.(금) ~ 2021. 4. 30.(금)까지
- 비용: 무료
- 지참: 신분증 및 아기수첩, 임신확인서, 의사소견서, 산모수첩 등

## ■ 보건기관

| 접종일정                       | 접종대상  | 비용 | 준비물 |
|----------------------------|---|----|-----|
| 2020. 10. 26. ~<br>백신 소진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60세~61세 관내 거주자 (1959년생 ~ 1960년생)</li> <li>● 기초생활수급자(50-61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li> </ul> | 무료 | 신분증 |

### ▶ 예방접종 안내 (09:00-12:00까지) ◀

- 보건소, 보건진료소: 월요일~금요일
- 보건지소: 월(묘량), 화(백수, 불갑), 수(홍농, 군서), 목(법성, 군남), 금(대마, 염산)

###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 이전에 독감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
- ▶ 계란에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사람(단, 계란을 먹고 심한 과민반응이 없었다면 금기대상이 아님)
- ▶ 독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랑-바레 증후군이나 다른 신경 이상이 생긴 사람



**붙임 1-1**

**62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 연번 | 읍·면         | 의료기관명 (28개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주소        |
|----|-------------|--------------|----------|---------------|
| 1  | 영광읍<br>[20] | 영광종합병원       | 350-8000 | 와룡로 3         |
| 2  |             | 영광기독병원       | 350-3115 | 신남로 265       |
| 3  |             | 영광군공립요양병원    | 353-5050 | 와룡로 3-1       |
| 4  |             | 중앙내과의원       | 351-0633 | 신남로 180, 308호 |
| 5  |             | 튼튼정형외과의원     | 351-8119 | 천년로 1474      |
| 6  |             | 조정형외과의원      | 353-3114 | 천년로 11길 45    |
| 7  |             | 복음내과의원       | 351-0124 | 옥당로 155       |
| 8  |             | 권원석마취통증의학과의원 | 353-7975 | 백산길 4, 2층     |
| 9  |             | 박도영비뇨기과의원    | 352-3377 | 신남로 181       |
| 10 |             | 신화식내과의원      | 352-1260 | 신남로 225       |
| 11 |             | 참사랑가정의학과의원   | 353-0255 | 신남로 198, 2층   |
| 12 |             | 고려연합의원       | 353-8570 | 신남로 180, 310호 |
| 13 |             | 정세진마취통증의학과의원 | 353-2565 | 옥당로 148, 2층   |
| 14 |             | 김판수이비인후과의원   | 353-9331 | 천년로 1503      |
| 15 |             | 김기영내과의원      | 353-7520 | 신남로 178       |
| 16 |             | 영광고운의원       | 353-0017 | 백산길 3         |
| 17 |             | 서울여성의원       | 353-9409 | 신남로 181-1, 2층 |
| 18 |             | 신세계의원        | 352-7342 | 신남로 178       |
| 19 |             | 영광미래의원       | 352-1475 | 옥당로 170       |
| 20 |             | 팔팔연합의원       | 353-7588 | 옥당로 134, 2층   |
| 21 | 백수읍         | 영광연합의원       | 351-7582 | 백수로 798       |
| 22 | 홍농읍<br>[2]  | 심재영의원        | 356-7129 | 홍농로 463       |
| 23 |             | 한국의원         | 356-7545 | 동부로 4-1       |
| 24 | 영산면<br>[2]  | 서울의원         | 351-9530 | 천년로 20-1      |
| 25 |             | 염산제일의원       | 352-9756 | 천년로 19-6      |
| 26 | 법성면<br>[3]  | 중앙외과의원       | 356-3971 | 진굴비길 82-3     |
| 27 |             | 아주의원         | 356-8302 | 굴비로 102, 2층   |
| 28 |             | 성심의원         | 356-4284 | 굴비로2길 3       |

**붙임 1-2**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 연번 | 읍면         | 의료기관명 (13개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주소        | 6개월~<br>만12세 | 만13세~<br>만18세 |
|----|------------|--------------|----------|---------------|--------------|---------------|
| 1  | 영광읍<br>[7] | 영광종합병원       | 350-8000 | 와룡로 3         | √            | √             |
| 2  |            | 영광기독병원       | 350-3115 | 신남로 265       | √            | √             |
| 3  |            | 복음내과의원       | 351-0124 | 옥당로 155       | √            | √             |
| 4  |            | 권원석마취통증의학과의원 | 353-7975 | 백산길 4, 2층     | √            | √             |
| 5  |            | 참사랑가정의학과의원   | 353-0255 | 신남로 198, 2층   |              | √             |
| 6  |            | 영광고운의원       | 353-0017 | 백산길 1         | √            | √             |
| 7  |            | 서울여성의원       | 353-9409 | 신남로 181-1, 2층 | √            | √             |
| 8  | 홍농읍<br>[3] | 심재영의원        | 356-7129 | 홍농로 463       | √            | √             |
| 9  |            | 한국의원         | 356-7545 | 동부로 4-1       | √            | √             |
| 10 |            | 중앙외과의원       | 356-3971 | 진굴비길 82-3     |              | √             |
| 11 | 영산면        | 서울의원         | 351-9530 | 천년로 20-1 15   |              | √             |
| 12 | 법성면<br>[2] | 성심의원         | 356-4284 | 굴비로2길 3       | √            | √             |
| 13 |            | 아주의원         | 356-8302 | 굴비로 102, 2층   |              | √             |

**붙임 1-3**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 연번 | 읍면         | 의료기관명 (5개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주소        | 비 고                               |
|----|------------|-------------|----------|---------------|-----------------------------------|
| 1  | 영광읍<br>[5] | 영광종합병원      | 350-8000 | 와룡로 3         | 임신탐진증<br>또는<br>산모수첩<br>증빙서류<br>지참 |
| 2  |            | 영광기독병원      | 350-3115 | 신남로 265       |                                   |
| 3  |            | 복음내과의원      | 351-0124 | 옥당로 155       |                                   |
| 4  |            | 영광고운의원      | 353-0017 | 백산길 1         |                                   |
| 5  |            | 서울여성의원      | 353-9409 | 신남로 181-1, 2층 |                                   |

# 매주 수요일은 「실내 소독의 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 매주 수요일은 「실내 소독의 날」 운영

- 소독장소 :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 소독제 : 가정용락스 100배 희석하여 사용
- 소독방법 :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닦아주기

### 올바른 소독 방법



# 전국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하여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독려

- 자진신고기간 : 2020년 11월 2일 ~ 2021년 5월 3일 (6개월)
- 자진신고대상
  -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방법
  - 가. 신고기관 : 영광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지하수 담당
  -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시공업체 대행 가능)

| 구분                      | 제출서식                                      | 구비서류  |
|-------------------------|---|---|
|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br>(「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지하수영향조사서<br>·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br>· 원상복구계획서 |
|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br>(「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br>· 원상복구계획서               |

## 202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 □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 구분                    | 위반내용                                   | 벌칙·과태료                              |
|-----------------------|--|-------------------------------------|
|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
|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

### □ 문의사항

○ 영광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문의(☎350-5486)

### □ 2021년도 적십자 회비모금 실시

○ 회비모금기간

- 집중모금 : 2020. 12. 1. ~ 2021. 1. 31. (62일간)

- 연중모금 : 2020. 12. 1. ~ 2021. 11. 30. (연간)

○ 모금목표금액 : 총 **71,000천 원**

○ 모금방법

- 지로모금 (금융기관 창구, CD/ATM, 무인공과금수납기)

- 인터넷 (인터넷,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 납부권장금액 (전년도와 동일)

(1) 세대주 : 10,000원

(2) 개인사업자 : 30,000원 이상

(3) 법인 : 100,000원 이상 차등고지

○ 용지 배부횟수 : 2회 배부

· 1차 : 2020. 11월 26일~27일

· 2차 : 2021. 2월초

○ 회원모집 제외대상: 만25세미만 및 75세이상 세대주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 제외가 불가능

■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 총무과(350-5234), 읍.면 총무부서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추진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 주세요”

우리 주변의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추진계획

- 모금기간 : 2020. 12. 1. ~ 2021. 1. 31.(62일간)
- 접수처 :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언론사
- 모금대상 : 군민, 기관.사회단체, 기업 등
- 모금방법

- 언론모금 (신문.방송)

- ☞ 방송(5) : KBS, MBC, KBC, CBS, BBS

- ☞ 신문사(8) :

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광주매일, 광남일보,  
호남매일, 남도일보

- 사랑의 계좌 모금(금융기관)

- ☞ 성금접수기관 지정 : 농협, 우체국, 각 은행 성금모금 창구 운영

## □ 기탁방법

- 금융기관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여 기탁하되 반드시 **“영광 흥OO”**으로 주소 명시하여 기탁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 사회복지과(350-4879), 읍.면 맞춤형복지부서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계좌



[사랑의계좌]

| 구분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사랑의계좌 | 농협   | 301-4000-3000-01 | 전라남도<br>공동모금회 |
|       | 광주은행 | 650-107-008000   |               |
|       | 우체국  | 503441-01-003542 |               |
|       | 우리은행 | 1005-903-781209  |               |
|       | 국민은행 | 688801-00-048029 |               |

[방송사 계좌]

| 방송사        | 은행명 | 계좌번호             | 연락처          | 팩스           | 예금주                   |
|------------|-----|------------------|--------------|--------------|-----------------------|
| KBS 광주방송총국 | 농협  | 301-0034-2417-51 | 062-610-7130 | 062-610-7799 | 전라남도<br>공동<br>모금<br>회 |
| KBS 목포방송국  | 농협  | 617-01-164604    | 061-270-7141 | 061-270-7399 |                       |
| KBS 순천방송국  | 농협  | 617-01-164617    | 061-750-7125 | 061-750-7399 |                       |
| MBC 광주문화방송 | 농협  | 617-01-162581    | 062-360-2118 | 062-360-2155 |                       |
| MBC 목포문화방송 | 농협  | 653015-51-134252 | 061-270-9652 | 061-270-9217 |                       |
| MBC 여수문화방송 | 농협  | 617-01-162606    | 061-650-3422 | 061-652-8506 |                       |
| KBC 광주방송   | 농협  | 617-01-162610    | 062-650-3057 | 062-673-3352 |                       |

## 도로명주소 바르게 알고 활용하세요!!

도로명 주소란? 도로에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해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주소 표기 방법입니다.

먼저 도로명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알아보까요?

- ▲도로명은?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주된 명사에 도로별 구분기준인 대로, 로, 길을 붙여서 부여하고,
- ▲건물번호는?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합니다.
- ▲도로구간 설정은? 직진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서쪽→동쪽, 남쪽→북쪽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고,
- ▲건물번호 부여는? 주된 출입구에 인접한 도로의 기초번호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실 때에는

1. 인터넷: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
2. 앱 : 주소찾아 앱 서비스
3. 전화 : 110(정부민원 콜센터), 120(자치단체 민원콜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자료제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90, 6619, 6269, 6227)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예비대학생과 대학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2020.11.24.(화)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기간 | 2020.11.24.(화) 09:00 ~ 12.29.(화) 1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대상 | '21학년도 대학 입학예정자(현 고교 3학년) 및 대학 재학생<br>※ 입학할 학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방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1 학생</p> <p>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접속후,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br/>☑ 학생 공인인증서 필요</p> <p>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br/><a href="http://www.kosaf.go.kr">www.kosaf.go.kr</a></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2 가구원(부모 등)</p> <p>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접속 후, 소득심사를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br/>☑ 가구원 공인인증서 필요</p> <p>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br/>Android iOS</p> </div> </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내용 | <p>학자금 지원 구간별 연간 지원액('20학년도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초 차상위</th> <th>1구간</th> <th>2구간</th> <th>3구간</th> <th>4구간</th> <th>5구간</th> <th>6구간</th> <th>7구간</th> <th>8구간</th> </tr> </thead> <tbody> <tr> <td>I 유형</td> <td></td> <td colspan="2">520만원</td> <td>390만원</td> <td>368만원</td> <td>120만원</td> <td colspan="3">67.5만원</td> </tr> <tr> <td>다자녀</td> <td></td> <td colspan="2">520만원</td> <td colspan="6">450만원</td> </tr> </tbody> </table> <p>※ 1)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 결정<br/>2) 성적, 이수학점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신입생은 성적요건 제외)</p> |       |     |       |       |       |        |     | 구분  | 기초 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I 유형 |  | 520만원 |  | 390만원 | 368만원 | 120만원 | 67.5만원 |  |  | 다자녀 |  | 520만원 |  | 450만원 |  |  |  |  |  |
| 구분   | 기초 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유형 |  | 520만원 |     | 390만원 | 368만원 | 120만원 | 67.5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자녀  |  | 520만원 |     | 45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kosaf.go.kr">www.kosaf.go.kr</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사문화개선 캠페인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044-201-2157)



##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미래질병대비과 ☎ 043-219-2956)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온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이런 분을 더욱 조심하세요!**

**저체온증 위험군**

- 음식이나 보온 (옷,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 장시간 야외에서 재는 사람 (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 술을 과음하거나 항우울제 또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람
- 추운 환경에서 재는 영유아

**동상 위험군**

- 장시간 야외에서 재는 사람 (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한 경우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한랭질환 증상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젖은 옷을 모두 제거하세요.
-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